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마을하수도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마을하수도를 포함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사용료 현실화 및 하수도요금 체계를 개선하여 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전 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하수도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를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에 포함·명시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함.(안 제7조제1호, 안 제8조제1호)

나. 하수도사용요율을 하수도사업원가를 고려하여 현실화하고, 효율적용도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하수도요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업종을 5종류에서 4종류(산업용을 영업용에 포함)로 조정하고, 업종별 단계도 일부조정하여 수도요금체계와 동일체계로 조정함.(안 별표1, 안별표 1-1)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 안건은 지난 2001년 6월 7일 제정되어 2002년 5월 16일 개정된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 제7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1호 및 제8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제1호의 내용일부와 하수도 사용 요금표(별표1) 및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별표1-1)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 개정내용이 하수도 법제2조(정의) 및 제6조2(마을하수도의 설치)의 규정에서 공공하수도에 마을하수도가 포함되어 우리시에서도 마을하수도시설 및 운영관리를 공공하수도로 포함하였고, 하수도 사용요율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지침과 우리시 하수도사업 원가를 고려하여 현실화 하였으며
- 요금 적용에 있어서는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적용하였으며, 하수도요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업종을 5종류에서 4종류로 수도요금체계로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 또한 수도요금 체계와 동일체계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함으로서 개정전의 하수도요금의 2~3배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다소 문제점은 있으나 개정전의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소폭의 인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못미치게 되므로 매년 잦은 인상 등 더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 하수도 사용요금을 처리지역과 비처리구역으로 구분한 것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처리구역으로, 하수관거 시설의 경우에는 비처리 구역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차등 적용한 것이며, 현재까지 우리시의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04년부터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처리구역이 대부분이며, 향후 마을하수도,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처리구역 요금적용을 받게 됨.

○ 금회 개정내용 중 제14조제2항제2호와 동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5호는 당초 동 조례 제정시 문구의 숫자 착오로 조례내용이 맞지 않은 사항을 금회 수정하는 것임.

○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하수도 요금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